

IV.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

1.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

가. 외국인투자 정책

□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표명

- 장기간의 독재 및 내전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황에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절실한 상황임.
- DR콩고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 보호 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 중임.
- 노동, 세금 등 일부를 제외한 외국인 비차별원칙의 신투자법을 통해 외국인투자 절차 등을 총괄하고, 투자청(National Agency for Investment Promotion : ANAP)을 설립하여 One-stop 서비스 제공

나.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

□ 수입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부여

투자인센티브 제도

□ 인센티브 내용

- 신규 장비 및 본체가의 10% 미만의 수입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면제
- 법인세 면제
- 사회간접시설부문 투자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적용
- 법인등록비용 면제
-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세금 면제

□ 혜택 대상

- 자국내 기업 설립시
- 자산 및 사업 규모 20만 달러 이상인 기업
- 환경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
- 매출 총이익이 35% 이상인 기업

□ 지역별 혜택 부여 기간 차등화

- A 경제지구(3년) : Kinshasa
- B 경제지구(4년) : Bas-Congo, Lubumbashi, Likasi, Kolwezi
- C 경제지구(5년) : Badundu, Equateur, Easatern Kasai, Western Kasai, Maniema, North-Kivu, South-Kivu, Eastern Province, Katanga

다. 외국인투자 절차

□ 실질적인 권한을 관련 부처에 위임

-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관련 부처에 위임됨.
 -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, 사업타당성조사, 계약 등은 재건부 (Ministry of Infrastructure, Public Works and Reconstruction)가 2008년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함.
 -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사 관리까지 담당한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각 해당 부처에서 관할하게 됨.

□ 정부 추진사업의 경우 담당 부서와의 접촉을 통하여 진행 가능

-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후 사업 담당 부서와의 접촉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음.
- Due Diligence, MOU 체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, 자원조달 과정에서 정부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내각, 국회 및 중앙은행의 승인 후 중앙은행이 IMF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함. (계약은 해당 부처와 체결)

□ 민간 추진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ANAP에서 간단하게 처리

- ANAP에 투자신청서 제출시 ANAP에서 검토한 후 관련 부처와 30일 이내에 협의 과정을 거쳐 승인서 발급

라. 투자상 제약 사항

□ 정부기구 운영 정상화 지연 및 부정부패 민연에 따른 업무 지연

-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지연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며, 대기업 투자시 대통령의 허가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.

2. 외국인투자 제도

가. 무역제도

□ 중앙은행을 통한 수출입 허가

- 수출의 경우 수출품, 가격 및 거래 통화를 상업은행을 통해 신고를 하며, 이는 인정시점에서 3개월 유효함.
 - 신고 후 상품선적일 기준으로 대금지급 마감일이 금, 다이아몬드는 10일, 나머지 품목은 30일이며, 거래은행이 수출대금에서 수출세를 원천징수함.
- 수입의 경우 수출입통관기구인 OCC(Office Congolais de Controle)에서 1만 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에는 1.5%, 미만의 물품에는 물가 변동에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함.
 - 프랑스의 BIVAC Int'l사가 DR콩고 정부를 대신하여 2.5만 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선적전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중앙

IV.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

은행은 BIVAC Int'l사의 검사를 받지 않는 수입품의 수량, 품질, 가격을 확인 후 FOB 기준으로 40%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.

- 기타 선적 서류로 상업송장, 포장 리스트, 선하증권, 수입 허가증, 원산지 증명 등이 필요하며, OCC와 세관에서는 붙어로 작성된 문서를 요구함.

나. 관세제도

CIF를 기준으로 3단계 증가세율 적용

- 장비 및 미조립 장비, 원자재, 농업 및 가축용 물품 등 : 5%
- 식품, 산업재, 부품, 의료품 및 장애자용 제품 등 : 10%
- 기타 완제품 : 20%
- 단, 우표, 수입인지, 중앙은행 화폐 및 외교관련업무를 위한 수입 제품은 면세

다. 조세제도

법인세	개인소득세
<input type="checkbox"/> 약 40%	<input type="checkbox"/> 30% (단, 해외파견자는 25%를 고용주가 부담)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, 공제, 환차손 및 해외파견자 소득세 등을 제외한 소득에 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치료비, 주택비, 교통비를 제외한 소득에 과세
<input type="checkbox"/> DR공고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영리기관은 비과세	

□ 법인세

- 자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고 DR콩고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면세 적용
- 기부, 공제, 환차손 및 해외과전자소득세 등을 제외한 소득에 약 40% 과세
- 비영리기관은 법인세 면제

감가상각율
□ 건물 : 2.5~5%
□ 플랜트 및 장비 : 10~15%
□ 가구류 : 10~15%
□ 자동차 : 25%
□ 컴퓨터 : 33%

- 결손 발생시 5년간 법인세 이연 가능하나 결손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은 없음.
 - 결손 발생시 매출의 1% 또는 최소소득세액인 2천 5백 달러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함.
- 세후 이익에 대한 과실 송금시 외환당국의 제한이 없으며, 이중 과세 방지협약 체결국은 현재까지 없음.

□ 개인소득세

- 임금, 기타 소득에 대해 치료비, 주택비,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하며, 통상 고용주가 원천징수
- 현지 근로자에게는 30%를 부과하며, 해외파견자는 25%의 특별세를 고용주가 부담함.

□ 부동산세

- 외교업무 관련 건물, 교회 및 비정부 기관을 제외한 부동산 및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하며, 부동산의 특징 및 위치 등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함.

□ 매출세

- DR콩고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시 3~13%의 매출세를 적용하고, DR콩고 거주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8%의 매출세를, 비거주자 제공 서비스는 30%의 매출세를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가 추가로 지급해야 함.
- 수입 재화 및 용역은 수입업체가 각각 3~13% 및 30%를 부담함.

□ 원천징수

- 자국내에서 발생한 배당, 이자, 저작권료에 대해서만 20%를 부과
- 부동산 임대수입은 세입자로부터 22%를 원천징수

라. 노동제도

□ 노동법 개정으로 엄격한 근로조건 적용

- 해외 유학 인력까지 고용 가능한 인력 수준이 다양하나 학위중 위조 등의 문제 발생 가능
- 2~3개월 수습기간 후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해고시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퇴직금을 달리하여 지급함.
 -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에 따르면, DR콩고에서 20년 근속 근로자 해고시 30.8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, 고용관련 순위에 있어서 DR콩고가 183개국 중 174위를 차지하였음.

□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

- 노동부 신고, 이민국 노동비자 획득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취업 비자는 비교적 취득이 용이함.

마. 금융제도

□ 상업은행은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

- 계좌 개설시 5천 달러 이상의 예치금 요구 및 높은 수수료율로 소매금융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, 대기업이 주거래 대상임.

IV.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

- 열악한 금융제도로 현재 DR콩고에 진출한 은행으로는 Citibank, 남아공 Stanbic Bank 등 소수이며, DR콩고 중앙은행(Banque Centrale du Congo)은 자국내 11개 상업은행의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바. 외환제도

□ 외환 및 대외무역 거래는 DR콩고 중앙은행이 관할

- 1만 달러 초과시 외화 반입 신고를 해야 하며, 미신고시 반출에도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 송금 필요
- DR콩고 내에서 외화로 지불하는 거래의 경우 중앙은행의 일일 고시환율에 따름.
- 외환 수수료는 1달러 이상의 거래 건당 0.2% 원천징수가 기본이며, DR콩고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의 업무관련 거래, DR콩고내 외환계좌를 통한 거래, 외환계좌에서의 자금 인출, 외교관련 활동 또는 국제기구 운영에 따른 거래 등에는 수수료가 면제됨.